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4일, 서명옥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9.) 상정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명옥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 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로 규정(제29조의4)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임 규정(제68조 및 시행령)에 따라 유관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에 대한 점검·확인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등에 위임하여

수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점검·확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역 행정 수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체계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함.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각 점검 주체가 점검·확인 계획, 추진 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 제29조의4제7항의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이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무가 지방 이양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에 맞추어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점검 결과의 종합적 관리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2024. 2. 6. 「아동복지법」 개정(시행 2024. 8. 7.)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이 추가되었으므로, 개정안 제29조의4제3항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고, 개정안 제29조의4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 그 의미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허가 또는 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